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5 - 35 - 169호

안 건 명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②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③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의결연월일 2015. 7. 9.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들 : 각 과태료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5.2.24~5.29)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50개의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으로 오인하도록 영업을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은 제7조제2항에서 (i)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i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은 이동전화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여 단말기유통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II.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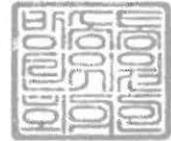
피심인들은 이동전화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판매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를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00일

○○○(판매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3.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게시한 공표문의 사진 제출 등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아.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4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2. 추가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들은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다.

3.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V.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VI.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원

김 재 홍



위원

이 기 주



위원

고 삼 석

